

부내 의견조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 산 경 영 과)

1. 개정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1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꿀벌 품종개량장과 꿀벌 증식장을 꿀벌 보전시설로 정의하고, 꿀벌 보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꿀벌 보전시설”은 꿀벌 품종개량장(여왕벌 및 수벌을 순계 교배하는 시설)과 꿀벌 증식장(우수 여왕벌을 대량으로 증식·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꿀벌 보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기준

가.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하고, 밀원식물 조성 등 사육 환경이 적절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외부의 다른 꿀벌과 접촉이 통제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갖추는 것
다. 양봉사, 관리실, 분석실, 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각 시설은 통풍, 채광, 방충, 방습 및 청결 유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

마. 인공수정 장비, 현미경, 곤충관찰 장비, 양봉기자재 등을 갖추는 것

2. 인력 기준

- 가. 꿀벌 보전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 책임자 1명을 갖추 것
- 나. 꿀벌의 보전과 관련한 연구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연구사·연구관 또는 지도사·지도관) 1명 이상을 갖추 것
- 다.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 1명 이상을 갖추 것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꿀벌 보전시설”은 꿀벌 품종개량장(여왕벌 및 수벌을 순계 교배하는 시설)과 꿀벌 증식장(우수 여왕벌을 대량으로 증식 ·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u> <u>② 꿀벌 보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시설 기준</u> <u>가.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하고, 밀원식물 조성 등 사육 환경이 적정할 것</u> <u>나. 외부의 다른 꿀벌과 접촉이 통제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갖추는 것</u> <u>다. 양봉사, 관리실, 분석실, 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각 시설은 통풍, 채광, 방충, 방습 및 청결 유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u> <u>라. 방역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 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u> <u>마. 인공수정 장비, 현미경, 곤충관찰 장비, 양봉기자</u>

	<u>재 등을 갖출 것</u> <u>2. 인력 기준</u> <u>가. 시설 책임자 1명, 연구원</u> <u>1명 이상, 보조 인력 1명</u> <u>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을</u> <u>권장</u> <u>나. 꿀벌 증식장에는 인력을</u> <u>상주시키지 않고 필요에</u> <u>따라 배치 가능</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연 락 처	(044) 201 - 2335